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5365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구합5243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9,515,6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14,212,020원, 농어촌특별세 2,756,0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